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조은희 · 김성원
서천호 · 김대식 · 이성권
박충권 · 임종득 · 고동진
한기호 · 안철수 · 배준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,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.

또한, 중대 폭력 피해,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,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
으로써,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제2항제1호).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2항제1호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(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에 관한 적용례) ①

제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익 침해 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익 침해 행위로 인하여 소송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3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) ① (생략)</p> <p>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<u>지원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3조의3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지원(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포함한다)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